

2017년 나이스 연말정산 교직원[정산대상자] 입력 방법



2018. 1.



홈텍스 소득공제자료 다운받기

1.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



-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2.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3. ① 귀속년도 2017년->② 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③ 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 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④ 한번에 내려받기->⑤ 소득세액공제자료내려받기

* 연말정산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액 공제 자료 내려받기



- 공제 대상으로 선택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를 다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내려받기 양식을 선택하세요.

※ 내려받은 파일을 열 수 없는 경우 자료실에서 [Adobe Acrobat Reader 9.0.exe](#)을 다운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진본 확인을 위해서는 자료실에서 전자문서 PDF 진본검증 플러그인([SetupPDFPlugin.zip](#))을 다운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직업훈련비/교복구입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 장기집합투자증권
 장기주식형 저축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드는 전세 미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문서열기암호(비밀번호)설정

5

내려받기

닫기

나이스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정산대상자]

1. 근로소득 확인

※ 해당년도 소득자료를 확인할수 있으며, 급여 담당자가 입력한 기타소득 자료 확인 가능->소득자료 확인이 안되는 경우는 급여담당자가 연말정산 대상자생성후 기초자료 생성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

선택자료	근로수당	급여	장려금	교육비	기부금	기타
201701	3,612,600	137,700	0	0	0	0
201702	0	0	0	0	0	0
201703	0	0	0	0	0	0
201704	0	0	0	0	0	0
201705	0	0	0	0	0	0
201706	0	0	0	0	0	0
201707	0	0	10,000	0	0	0
201711	23,837,600	137,700	0	0	0	0
201712	3,612,600	137,700	0	0	0	0
201801	23,837,600	137,700	10,000	0	0	0



Written by Kwon O Young. 권오영

- 1) 메뉴위치 : [나의메뉴-연말정산-근로소득확인]
- 2) 급여담당자가 연말정산 기초자료생성 작업을 한 경우, 2017년도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3) 급여담당자가 등록한 기타소득 자료도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다.

2. 정산공제자료등록

1) 인적공제탭

- ▶ 인적공제탭에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후 → 저장
 - 기본공제대상자 빠진 경우→인정공제추가
 - 기본공제대상자 아닌 경우→소득공제관계 해당자 선택 삭제

※ PDF파일 업로드시 인적공제탭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세청
자료가 정상 등록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일치 해야함

반드시 확인!

※ 모든 입력 작업 완료후 최종 확인후 저장 꼭 눌러주세요

2) PDF업로드탭

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귀속년도 2017년→조회→PDF업로드→찾기[홈텍스에서 다운 받은 PDF파일 (2017년 연말정산 흥길동.pdf) 파일 찾기]→등록

※ 파일 업로드시 주의사항
 - 업로드시 인적공제내역에 존재하지 않는 자료는 등록 안 되오니 먼저 인적공제내역에 입력 후 등록하십시오.
 - 상세내역(의료비, 기부금,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증권저축) 자료만 개별내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PDF파일 다운로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한 경우 비밀번호 입력란에 입력해야합니다.
 - PDF파일업로드 메뉴에서 등록한 파일은 업로드 이후에는 업로드 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없습니다.



☞ 파일 업로드시 주의사항 ☜

- ▶ 업로드시 인적공제내역에 존재하지 않는 자료는 등록 안 되오니 먼저 인적공제내역에 입력 후 등록
 - > 인적공제 내역에 존재하는 대상자만 업로드하여 적용 가능
 - > 소득공제 받고 싶은 인적공제가 먼저 등록되어 있어야함
- ▶ 상세내역(의료비, 기부금,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증권저축) 자료만 개별내역에 등록할 수 있음
- ▶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PDF파일 다운로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한 경우 비밀번호 입력란에 입력해야함
- ▶ PDF파일업로드 메뉴에서 등록한 파일은 업로드 이후에는 업로드 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없음

☞ 입력시 유의 사항 ☜

1. 정산공제자료 PDF파일 등록전 인적공제 대상자 확인후 소득 기본대상자가 아닌 대상자는 삭제 후 업로드 해야함.
-> 흠텍스에서 받은 파일의 기본공제 대상자와 나이스 정산공제자료-**인적공제 기본대상자가 일치해야함**(흡텍스 PDF파일 다운로드시에도 기본공제 대상자만 받아야함)
2. 흠텍스 공제자료 외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기부금명세서등록 입력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는 숫자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 750308-1234567 →7503081234567

3) 기본사항탭

▶ PDF파일 업로드 결과 확인 및 추가 등록

- ① 메뉴위치 : [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
- ② 업무담당자가 등록 권한을 부여한 경우, 2017년도 정산공제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 ③ **기본사항탭**에서는 연말정산을 위한 본인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 및 수정할 수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정산공제자료등록' (Tax Deduction Document Registration) screen. The main area contains several input fields and dropdown menus. On the left, there's a sidebar with various menu items and buttons. Red numbers from 1 to 10 are overlaid on the screen to highlight specific fields or buttons. 1: Top-left menu bar. 2: '연말정산' button in the sidebar. 3: '정산공제자료등록' button in the sidebar. 4: '2017년' dropdown in the top right. 5: Search button. 6: '기본사항' tab. 7: '세대주' dropdown. 8: '저장' button. 9: '근무기간' section. 10: '근무기간변경' button.



Written by Kwon O Young. 권오영

- **국적** : 본인의 국적을 등록한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세팅되며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닐 경우, 리스트에서 해당 국가를 찾아 등록한다.
- **세대주** : 본인의 세대주, 세대원 여부를 등록한다.
- **근무기간** : 현근무지의 근무기간이 조회되며 필요시 수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작일은 2017.01.01일이 종료일은 2017.12.31일이 반영된다. 년중 신규임용자 및 퇴직자의 경우 인사기록의 현기관임용일, 퇴직일이 반영된다.
- **기타소득** : 급여업무담당자가 기타소득으로 등록한 내역이 조회된다.
- **기타공제** : 급여업무담당자가 기타공제로 등록한 내역이 조회된다.

반드시 확인!

* 정산공제자료등록 -> 기본사항탭 -> 국적 옆 저장 -> 근무기간 옆 **근무기간변경클릭**
 - 저장을 눌러줘야 적용 반영이 제대로 됨 반드시 잊지 마시구 저장 눌러주세요
 - 모든 입력 작업 완료후 최종 확인후 저장 꼭 눌러주세요

4) 근무지실적탭

근무지실적탭에서는 월급여에서 반영된 종전현근무지 소득 및 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증전근무지실적	현근무지실적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
건강보험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소득세	소득세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



5] 인적공제탭

인적공제탭에서는 본인의 공제받을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각종 공제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인적공제자료는 최초 연말정산 기초자료생성 시 월급여의 가족사항에서 반영되나, 이후 변동사항은 직접 수정해야 한다.

- ① 부양가족을 추가할 경우 [인적공제추가] 버튼으로 작업하고, 필요 시 개인별로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다.
- ②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본인’은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
- ③ 인적공제사항의 소득공제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적공제항목, 각 가족별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한다.
 - **인적공제**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자(1947.12.31.이전 출생자), 6세이하 (2011.01.01. 이후 출생자), 출산입양, 장애인, 장애인구분코드를 선택한다.

* 2017년 귀속 연말정산 둘째 이상 자녀 출생 · 입양 시 공제 확대

- 첫째 출생 · 입양 시 30만원
- 둘째 출생 · 입양 시 50만원,
- 셋째 이상 출생 · 입양 시 70만원

	소득공제관계	주민등록번호	인적공제									소득공제 항목(국세청자료/그밖의)		
			기본 공제	부 녀 자	한 부 모	경 로 자	6 세 이 하	출 산 입 양	출 산 입 양 구 분 코 드	장 애 인	장 애 인 구 분 코 드	건 강 · 고 용 등	보 장 성	장 이
	직계비속 자녀	080101-4234567 김철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	0	0				
	직계비속 자녀	990101-1234567 김출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	0	0				
	직계비속 자녀	170501-1234567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첫째 2 둘째 3 셋째이상	0	0



Written by Kwon O Young. 권오영

- 보험료 : 부양가족별 보장성보험, 장애인보험 지출 금액을 등록한다.
- 의료비, 교육비 : 부양가족별 의료비, 교육비 지출금액을 등록한다.

*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율 확대

- 15% → 20%로 상향

TIP

* 본인, 배우자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경우 세액공제 의료비 처리방법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제공 PDF 자료를 업로드하면 정산공제자료등록-인적공제 탭과 세액공제/명세 탭에 의료비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의료비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경우](#) 아래 [정산공제자료등록-세액공제/명세 탭](#) 화면에서 난임시술비란 난임시술비(본인·장애인), 난임시술비(그밖의대상자)에 입력해주셔야 대상금액에서 20% 공제율 적용됩니다.

정산공제자료등록

세액공제				
연금저축		1,200,00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400,000
보험료	보장성(장애인포함)	441,000	장애인보장성	0
의료비	본인·65세이상자	2,615,830		
	장애인 의료비	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75,100
	난임시술비(본인·장애인)	100,000	난임시술비(그밖의대상자)	0
※ 난임시술비(본인·장애인)는 의료비(본인·장애인)에 포함된 난임시술비 금액을 입력합니다.				
교육비 (공제금액)	본인교육비	4,225,209	취학전아동 + 유초중고교육비	3,247,940
	대학교육비	2,600,000	장애인교육비	0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정치자금기부금	246,200		
	법정기부금	84,0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외)	430,000	지정기부금(종교단체)	400,000
※ 종전(현)근무지 자료의 기부금은 2017년 귀속분부터 세금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기부금명세서 등록된 기부금만 세금계산에 포함됩니다.				

- 인적공제탭 의료비가 본인·65세이상자, 그밖의공제대상자 의료비 란에 자동 입력 됨
- 난임시술비(본인·장애인): 본인 난임시술비, 장애인 배우자 난임시술비 입력
- 난임시술비(그밖의대상자): 비장애인 배우자 난임시술비 입력

TIP

* 세액공제/명세 탭 화면 의료비

-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경우 세액공제/명세 탭 화면 상의 의료비 총합계 금액이 인제공제 의료비 금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에는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액 등 : 부양가족별 각각의 내역을 등록한다.
 -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는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금액을 제외하고 등록
- 기부금 : 부양가족별 기부금 지출금액을 등록한다.
- 건강보험, 고용보험 : 연말정산 기초자료생성 작업을 하면 나이스에서 공제된 4대보험 합계 금액이 자동으로 표기 된다. (수기 변경 가능)
 - * 국세청 제공 4대보험 관련 PDF 자료는 업로드해도 반영 되지 않음

반드시 확인

* 모든 입력 작업 완료후 최종 확인후 저장 꼭 눌러주세요



6] 특별공제탭

특별공제탭에서는 주택자금 및 기부금(이월분)을 등록한다.

기본사항	근무지실적	인적공제	특별공제	그밖의소득공제	세액공제/명세	소득공제신고서	PDF업로드	원전징수영수증
특별공제								
								저장
주택자금	주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40,842,520	거주자	3,120			
	장기주택 (15년이상)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0	15년~29년	43,700	30년 이상	1,622,393
		2012년 이후 차입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6,667,961		
	저당차입금	2015년 이후 차입분	기타 대출			0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0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		
	이자상환액	그밖의 대출			0			
		10~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6,534,318			
	이월금등록							
기부금	2013년 이전 이월금(소득공제)	법정기부금	30	2014년 이후 이월금(세액공제)	법정기부금	1,230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1,230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230		
		지정기부금-종교단체	1,230		지정기부금-종교단체	312,312,330		

- 주택자금

- **주택차입금 원리금상환액(대출기관)**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주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거주자)** : 대부분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2011년 이전)** : 대출기간에 따라 입력한다.
 ※ 공제 한도 : 15년 미만(600만원), 15~29년(1,000만원), 30년 이상(1,500만원)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2012년 이후)**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에 대하여 고정금리/비거치상환, 기타대출로 나누어 입력한다.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2015년 이후)** : 2015년 이후 차입금에 대하여 상환기간 및 고정금리/비거치상환, 기타대출로 나누어 입력한다.
- **기부금이월금** :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종교단체외) 이월금에 대하여 입력한다.
 ※ 이월금이 아닌 2017년 귀속분은 세액공제에 입력한다.

**TIP****※ 기부금 이월금 등록 방법**

- 17년 귀속분부터 기부금조정명세서 관리 목적으로 입력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이월금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생성되며, [추가] 버튼을 눌러 기부금이월금을 등록 후 저장한다. 입력된 내용은 기부금명세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부금 이월금					추가	저장	삭제
기부금코드	기부년도	③기부금액	④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금액(③-④)			
지정기부금	2016	150,400	50,000	100,400			
지정기부금	2015	120,000	50,000	70,000			

· 2013년 이전 기부금이월액은 소득공제 대상

· 2014년 이후 기부금이월액은 세액공제 대상

※ 이월금이 아닌 2017년 귀속분은 세액공제에 입력한다.

※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고액기부금 하향조정 및 세액 공제율 인상

- 고액기부금 기준: 3천만원 → 2천만원,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25% → 30%

반드시 확인!

※ 모든 입력 작업 완료후 최종 확인후 저장 꼭 눌러주세요

7) 그 밖의 소득공제 탭

그 밖의 소득공제 탭에서는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기타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사항	근무지실적	인적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명세	소득공제신고서	PDF업로드	월천징수영수증
기타공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600,000	소기업공제부금	3,000,000					
주택마련 저축	주택청약저축	1,200,000	<input type="checkbox"/> 가입일 2015년1월1일 이후 여부					
	주택청약종합저축	0	<input type="checkbox"/> 가입일 2015년1월1일 이후 여부					
	근로자주택 마련저축	0						
투자조합 출자 등	2015년 출자·투자분	조합등 투자금액(10%)	103	벤처투자금액(100%, 50%, 30%)	105			
	2016년 출자·투자분	조합등 투자금액(10%)	104	벤처투자금액(100%, 50%, 30%)	106			
	2017년 출자·투자분	조합등 투자금액(10%)	108	벤처투자금액(100%, 50%, 30%)	109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제외)	410,489,983	직불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제외)	324,038,682					
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제외)	12,142,890							
전통시장 사용액	28,712,660	대중교통 이용액	20,059,670					
본인 신용카드등사용액(2014년)	0	본인 추가공제율사용액(2014년)	0					
본인 신용카드등사용액(2015년)	0	본인 추가공제율사용액(2016년 상반기)	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2,500,000							



Written by Kwon O Young. 권오영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분) 납입액을 입력한다.
- 소기업공제부금 :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을 입력한다.

※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소기업공제부금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 (이전) 공제한도 300만원
- (변경) 총급여액 4천만원 이하 공제한도 500만원
총급여액 4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공제한도 300만원,
총급여액 1억원 초과 공제한도 200만원,

- 주택마련저축 : 아래 저축별로 납입한 금액을 입력한다.

·주택청약저축 : 주택법에 따라 납입. 연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240만원 이하

- 2015년부터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240만원 한도)의 40% 공제
- '14년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 기준납입한도(120만원)로 ' 17년까지 공제가능
·근로자주택 마련저축 : 법률 제7030호에 따라 납입. 월 15만원 이하.

TIP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입력 하였지만 소득공제금액 반영 안되는 경우

- 조특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 액의 합계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투자조합출자 : 거주자/개인에 따라 2015년도 이후 출자 · 투자분에 입력

·10%에 입력 :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총 금액
에 따라 구분하여 입력

·2015년 출자투자분 :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을 100%,
50%, 30%란에 구분하여 입력

※ 천 5백만원 이하는 10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50%, 5천만원 초과는 30%에 입력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제외), 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제외), 직불

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제외),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 인적공제에 등록된 금액이 합산되어 조회 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 (①+②+③+④-⑤)에 해당하는 금액
 -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40%
 -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준대규모 점포,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장과 밖의 사업장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사업자는 제외
 -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40%
 - ③ 현금영수증, 직불 · 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금액 제외) × 30%
 - ④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 . 현금영수증, 직불 · 선불카드사용분) × 15%
 -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15%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

-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7천만원 ~ 1.2억원	300만원 ('18.1.1. 이후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 금액에 포함 (적용기한 : '18.12.31.)

TIP

* 중고차구입비 국세청 PDF 제공자료 누락된 경우 처리방법

- 2018년 국세청 간소화 시스템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기본적으로 중고차구입비가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혹여 누락된 경우 연말정산 업무 담당자에게 중고차매매거래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급여 업무담당자가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추가 입력 가능 함

* 2017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비촉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 ('17~'18년 지출분)으로 인상 (30% → 4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적립식 펀드 납입 금액 입력(600만원 한도, 40%공제)

반드시 확인!

* 모든 입력 작업 완료후 최종 확인후 저장 꼭 눌러주세요



8) 세액공제/명세 탭

정산공제자료등록

2018.01.10. 09:24 (1)

기본사항	근무지실적	인적공제	특별공제	그밖의소득공제	세액공제/명세	소득공제신고서	PDF업로드	원천징수영수증	저장																																														
정산년월 [2017년] [12월]	연말정산	성명 [최7139]	주민번호 [714523-2021133]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연금저축</th> <th>1,200,000</th> <th>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th> <th>2,400,000</th> </tr> </thead> <tbody> <tr> <td>보험료</td> <td>보장성(장애인포함)</td> <td>441,000</td> <td>장애인보장성</td> <td>0</td> </tr> <tr> <td rowspan="2">의료비</td> <td>본인 65세이상자</td> <td>2,615,830</td> <td></td> <td></td> </tr> <tr> <td>장애인 의료비</td> <td>0</td> <td>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td> <td>75,100</td> </tr> <tr> <td rowspan="2">교육비</td> <td>난임시술비(본인)</td> <td>0</td> <td>난임시술비(배우자)</td> <td>0</td> </tr> <tr> <td>본인 교육비</td> <td>4,225,209</td> <td>취학전아동 + 유초중고교육비</td> <td>3,247,940</td> </tr> <tr> <td rowspan="3">기부금 (기부금 명세서)</td> <td>대학교육비</td> <td>2,600,000</td> <td>장애인교육비</td> <td>0</td> </tr> <tr> <td>정지자금기부금</td> <td>246,200</td> <td></td> <td></td> </tr> <tr> <td>법정기부금</td> <td>84,000</td> <td>우리사주조합기부금</td> <td>0</td> </tr> <tr> <td colspan="2">지정기부금 (종교단체외)</td> <td>430,000</td> <td>지정기부금(종교단체)</td> <td>400,000</td> </tr> </tbody> </table>										연금저축		1,200,00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400,000	보험료	보장성(장애인포함)	441,000	장애인보장성	0	의료비	본인 65세이상자	2,615,830			장애인 의료비	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75,100	교육비	난임시술비(본인)	0	난임시술비(배우자)	0	본인 교육비	4,225,209	취학전아동 + 유초중고교육비	3,247,940	기부금 (기부금 명세서)	대학교육비	2,600,000	장애인교육비	0	정지자금기부금	246,200			법정기부금	84,0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외)		430,000	지정기부금(종교단체)	400,000
연금저축		1,200,00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400,000																																																			
보험료	보장성(장애인포함)	441,000	장애인보장성	0																																																			
의료비	본인 65세이상자	2,615,830																																																					
	장애인 의료비	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75,100																																																			
교육비	난임시술비(본인)	0	난임시술비(배우자)	0																																																			
	본인 교육비	4,225,209	취학전아동 + 유초중고교육비	3,247,940																																																			
기부금 (기부금 명세서)	대학교육비	2,600,000	장애인교육비	0																																																			
	정지자금기부금	246,200																																																					
	법정기부금	84,0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외)		430,000	지정기부금(종교단체)	400,000																																																			
※ 총전(현)근무지 자료의 기부금은 2017년 귀속분부터 세금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기부금명세서 등록된 기부금만 세금계산에 포함됩니다.																																																							
<table border="1"> <tbody> <tr> <td>외국납부세액</td> <td>0</td> <td>조세조약상 세액감면액</td> <td>0</td> </tr> <tr> <td>조세조약감면시작일자</td> <td></td> <td>조세조약감면종료일자</td> <td></td> </tr> <tr> <td>소득세법감면세액(외국인근로자)</td> <td>0</td> <td>조강법감면세액(외국인근로자)</td> <td>0</td> </tr> <tr> <td>조강법감면시작일자</td> <td>2017.12.01</td> <td>조강법감면종료일자</td> <td>2017.12.05</td> </tr> <tr> <td>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td> <td>0</td> <td>월세액</td> <td>0</td> </tr> </tbody> </table>										외국납부세액	0	조세조약상 세액감면액	0	조세조약감면시작일자		조세조약감면종료일자		소득세법감면세액(외국인근로자)	0	조강법감면세액(외국인근로자)	0	조강법감면시작일자	2017.12.01	조강법감면종료일자	2017.12.05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	0	월세액	0																										
외국납부세액	0	조세조약상 세액감면액	0																																																				
조세조약감면시작일자		조세조약감면종료일자																																																					
소득세법감면세액(외국인근로자)	0	조강법감면세액(외국인근로자)	0																																																				
조강법감면시작일자	2017.12.01	조강법감면종료일자	2017.12.05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	0	월세액	0																																																				

- 연금계좌 : 연금저축, 퇴직연금으로 구분

- 연금저축 : 2001.1.1. 이후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연금 기여형(DC형), 개인형(IRP)

*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 연금저축공제한도 : 400만원
(단,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인적공제에서 등록된 금액이 자동으로 합산된다.

-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장애인 보험료 포함
- 의료비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그 밖의 공제대상자, 난임시술비로 나누어 조회됨

*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율 확대

- 15% → 20%로 상향

□ 난임시술비 입력방법 변경

○ 정산공제자료등록 의료비 화면 (변경사항 없음)

인적공제

인적공제 추가

삭제

저장

인적공제			각종 소득공제 항목(국세청자료/그밖의자료)							
출산 임양 구분 코드	장애인 구분 코드	장애인 구분 코드	보험료			교육비				
			건강· 고용 등	보장성	장애인전용	의료비	취학전아동	초중고	대학	장애인 특수교육비
▼	□	▼	0	441,000	0	2,615,830	0	0	4,225,209	0
			3,377,520	0	0	0	0	0	0	0
▼	□	▼	0	0	0	0	0	0	0	0
▼	□	▼	0	0	0	0	0	0	0	0
▼	□	▼	0	0	0	0	0	0	0	0
▼	□	▼	0	0	0	75,100	0	0	1,400,000	0
▼	□	▼	0	0	0	0	0	0	0	0
▼	□	▼	0	0	0	0	0	0	247,940	0



○ 정산공제자료등록 의료비 입력 화면

정산공제자료등록

정산년월	2017년	12월	연말정산	성명	최7139	주민번호	714523-2021133	조회
<input type="button" value="기본사항"/> <input type="button" value="근무지실적"/> <input type="button" value="인적공제"/> <input type="button" value="특별공제"/> <input type="button" value="그밖의소득공제"/> 세액공제/명세 <input type="button" value="소득공제신고서"/> <input type="button" value="PDF업로드"/> <input type="button" value="원천징수영수증"/>								
세액공제								
연금저축		1,200,00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400,000			
보험료	보장성(장애인포함)	441,000	장애인보장성		0			
의료비	본인·65세이상자	2,615,830						
	장애인 의료비	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75,100			
	난임시술비(본인·장애인)	100,000	난임시술비(그밖의대상자)		0			
※ 난임시술비(본인·장애인)는 의료비(본인·장애인)에 포함된 난임시술비 금액을 입력합니다.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본인교육비	4,225,209	취학전아동 + 유초중고교육비		3,247,940			
	대학교육비	2,600,000	장애인교육비		0			
	정치자금기부금	246,200						
교육비 (공제금액)	법정기부금	84,0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외)	430,000	지정기부금(종교단체)		400,000			
※ 종전(현)근무지 자료의 기부금은 2017년 귀속분부터 세금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기부금명세서 등록된 기부금만 세금계산에 포함됩니다.								

- 인적공제탭 의료비가 본인·65세이상자, 그밖의공제대상자의료비란에 자동 입력 됨
- 난임시술비(본인·장애인): 본인 난임시술비, 장애인 배우자 난임시술비 입력
- 난임시술비(그밖의대상자): 비장애인 배우자 난임시술비 입력



■ 세액공제/명세 탭 화면 의료비

-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경우 세액공제/명세 탭 화면 상의 의료비 총합계 금액이 인제공제 의료비 금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에는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 교육비 : 본인, 대학, 장애인, 취학전아동+유초중으로 나누어 조회됨
※ 교복구입비(공제대상 한도액: 학생1인당 연50만원)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체험학습비*(공제대상 한도액: 학생1인당 연30만원) *체험학습: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등
-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 종전(현)근무지 자료와 기부금은 2017년 귀속분부터 세금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기부금 명세서 등록된 기부금만 세금계산에 포함됨.



□ 기부금 입력 방법 변경

○ 종전(현)근무지 기부금 세액공제 반영 안함 (단순 조회만 가능)

기본메뉴		업무메뉴															
국공립급여/연말정산		종전(현)근무지자료등록															
대상자관리		정산년월 2017년 12월 연말정산 설명 최7139 주민번호 714523-2021133 조회															
자료관리		근무지/소득 비과세 공제 세금/기부금 일괄 출력															
정산공제자료등록		금여에서 원천징수된 기부금은 조회만 가능하며, 해당 기부금은 세액계산시 활용되지 않는다.															
종전(현)근무지자료등록																	
의료비지급내역등록																	
기부금명세서등록																	
기타소득등록																	
기타공제등록																	
연금저축지급내역등록																	
월세명세서등록																	
연말정산처리																	
최근 사용 메뉴																	
최근 사용 메뉴 선택																	
2018.01.10. 15:22 (1)																	



○(변경 후) 2017년 귀속 급여 원천징수 기부금 인적공제, 세액공제/명세 적용 안함

정산공제자료등록

2018.01.10. 09:24 (1)

기본사항	근무지실적	인적공제	특별공제	그밖의소득공제	세액공제/명세	소득공제신고서	PDF업로드	원천징수영수증																																																																																																																																																						
정산년월 2017년 12월 연말정산		성명 최7139	주민번호 714523-2021133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세액공제</th> <th colspan="7">장정</th> </tr> <tr> <th>보험료</th> <th>연금저축</th> <th>1,200,000</th> <th>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th> <th>2,400,000</th> <th colspan="4"></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의료비</td> <td>보장성(장애인포함)</td> <td>441,000</td> <td>장애인보장성</td> <td>0</td> <td colspan="4"></td> </tr> <tr> <td>본인 65세이상자</td> <td>2,615,830</td> <td></td> <td></td> <td colspan="4"></td> </tr> <tr> <td rowspan="2">교육비 (공제금액)</td> <td>장애인 의료비</td> <td>0</td> <td>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td> <td>75,100</td> <td colspan="4"></td> </tr> <tr> <td>난임시술비(본인)</td> <td>0</td> <td>난임시술비(배우자)</td> <td>0</td> <td colspan="4"></td> </tr> <tr> <td rowspan="2">기부금 (기부금명세서)</td> <td>본인교육비</td> <td>4,225,209</td> <td>취학전아동 + 유조중고교육비</td> <td>3,247,940</td> <td colspan="4"></td> </tr> <tr> <td>대학교육비</td> <td>2,600,000</td> <td>장애인교육비</td> <td>0</td> <td colspan="4"></td> </tr> <tr> <td colspan="2">정치자금기부금</td> <td>246,200</td> <td></td> <td></td> <td colspan="4"></td> </tr> <tr> <td colspan="2">법정기부금</td> <td>84,000</td> <td>우리사주조합기부금</td> <td>0</td> <td colspan="4"></td> </tr> <tr> <td colspan="2">지정기부금 (종교단체외)</td> <td>430,000</td> <td>지정기부금(종교단체)</td> <td>400,000</td> <td colspan="4"></td> </tr> <tr> <td colspan="9">※ 종전(현)근무지 자료의 기부금은 2017년 귀속분부터 세금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기부금명세서 등록된 기부금만 세금계산에 포함됩니다.</td> </tr> <tr> <td colspan="2">외국납부세액</td> <td>0</td> <td>조세조약상 세액감면액</td> <td>0</td> <td colspan="4"></td> </tr> <tr> <td colspan="2">조세조약감면시작일자:</td> <td></td> <td>조세조약감면종료일자:</td> <td></td> <td colspan="4"></td> </tr> <tr> <td colspan="2">소득세법감면세액(외국인근로자)</td> <td>0</td> <td>조감법감면세액(외국인근로자)</td> <td>0</td> <td colspan="4"></td> </tr> <tr> <td colspan="2">조감법감면시작일자</td> <td>2017.12.01</td> <td>조감법감면종료일자</td> <td>2017.12.05</td> <td colspan="4"></td> </tr> <tr> <td colspan="2">주택자금자입금이자세액</td> <td>0</td> <td>豁免액</td> <td>0</td> <td colspan="4"></td> </tr> </tbody> </table>									세액공제		장정							보험료	연금저축	1,200,00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400,000					의료비	보장성(장애인포함)	441,000	장애인보장성	0					본인 65세이상자	2,615,830							교육비 (공제금액)	장애인 의료비	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75,100					난임시술비(본인)	0	난임시술비(배우자)	0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본인교육비	4,225,209	취학전아동 + 유조중고교육비	3,247,940					대학교육비	2,600,000	장애인교육비	0					정치자금기부금		246,200							법정기부금		84,0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외)		430,000	지정기부금(종교단체)	400,000					※ 종전(현)근무지 자료의 기부금은 2017년 귀속분부터 세금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기부금명세서 등록된 기부금만 세금계산에 포함됩니다.									외국납부세액		0	조세조약상 세액감면액	0					조세조약감면시작일자:			조세조약감면종료일자:						소득세법감면세액(외국인근로자)		0	조감법감면세액(외국인근로자)	0					조감법감면시작일자		2017.12.01	조감법감면종료일자	2017.12.05					주택자금자입금이자세액		0	豁免액	0				
세액공제		장정																																																																																																																																																												
보험료	연금저축	1,200,00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400,000																																																																																																																																																										
의료비	보장성(장애인포함)	441,000	장애인보장성	0																																																																																																																																																										
	본인 65세이상자	2,615,830																																																																																																																																																												
교육비 (공제금액)	장애인 의료비	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75,100																																																																																																																																																										
	난임시술비(본인)	0	난임시술비(배우자)	0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본인교육비	4,225,209	취학전아동 + 유조중고교육비	3,247,940																																																																																																																																																										
	대학교육비	2,600,000	장애인교육비	0																																																																																																																																																										
정치자금기부금		246,200																																																																																																																																																												
법정기부금		84,0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외)		430,000	지정기부금(종교단체)	400,000																																																																																																																																																										
※ 종전(현)근무지 자료의 기부금은 2017년 귀속분부터 세금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기부금명세서 등록된 기부금만 세금계산에 포함됩니다.																																																																																																																																																														
외국납부세액		0	조세조약상 세액감면액	0																																																																																																																																																										
조세조약감면시작일자:			조세조약감면종료일자:																																																																																																																																																											
소득세법감면세액(외국인근로자)		0	조감법감면세액(외국인근로자)	0																																																																																																																																																										
조감법감면시작일자		2017.12.01	조감법감면종료일자	2017.12.05																																																																																																																																																										
주택자금자입금이자세액		0	豁免액	0																																																																																																																																																										

○ 기부금 인적공제화면 개선 (윗칸: PDF자료, 아래칸: 기부금명세서 수기 입력 자료)

정산공제자료등록

기본사항	근무지실적	인적공제	특별공제	그밖의소득공제	세액공제/명세	소득공제신고서	PDF업로드	원천징수영수증																																																																																																																																															
정산년월 2017년 12월 연말정산		성명 최7139	주민번호 714523-2021133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8">인적공제</th> <th>인적공제추가</th> <th>삭제</th> <th>저장</th> </tr> <tr> <th colspan="8">각종 소득공제 항목(국세청자료/그밖의자료)</th> <th colspan="3"></th> </tr> <tr> <th>학전아동</th> <th>초중고</th> <th>대학</th> <th>장애인 특수교육비</th> <th>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th> <th>직불카드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th> <th>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th> <th>전통시장 사용액</th> <th>대중교통 이용액</th> <th>기부금</th> <th colspan="3"></th> </tr> </thead> <tbody> <tr> <td>0</td> <td>0</td> <td>4,225,209</td> <td>0</td> <td>19,247,100</td> <td>23,494,794</td> <td>2,8</td> <td>기부금 PDF 자료 업로드 결과 반영 →</td> <td>636,300</td> <td></td> <td></td> <td></td> </tr> <tr>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td> <td>기부금명세서 입력분 조회 가능 →</td> <td>0</td> <td></td> <td></td> <td></td> </tr> <tr>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2,079,212</td> <td>0</td> <td>0</td> <td>0</td> <td></td> <td></td> <td></td> </tr> <tr>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td> <td></td> <td></td> </tr> <tr> <td>0</td> <td>0</td> <td>0</td> <td>0</td> <td>16,824,238</td> <td>4,451,000</td> <td>19,640</td> <td>1,419,800</td> <td>126,000</td> <td></td> <td></td> <td></td> </tr> <tr>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td> <td></td> <td></td> </tr> <tr> <td>0</td> <td>0</td> <td>1,400,000</td> <td>0</td> <td>9,538,660</td> <td>12,630,296</td> <td>8,800</td> <td>80,000</td> <td>177,800</td> <td>801,000</td> <td></td> <td></td> </tr> <tr>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td> <td></td> <td></td> </tr> <tr> <td>0</td> <td>247,94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인적공제								인적공제추가	삭제	저장	각종 소득공제 항목(국세청자료/그밖의자료)											학전아동	초중고	대학	장애인 특수교육비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	직불카드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기부금				0	0	4,225,209	0	19,247,100	23,494,794	2,8	기부금 PDF 자료 업로드 결과 반영 →	636,300				0	0	0	0	0	0		기부금명세서 입력분 조회 가능 →	0				0	0	0	0	0	2,079,21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6,824,238	4,451,000	19,640	1,419,800	126,000				0	0	0	0	0	0	0	0	0				0	0	1,400,000	0	9,538,660	12,630,296	8,800	80,000	177,800	801,000			0	0	0	0	0	0	0	0	0				0	247,940	0	0	0	0	0	0	0			
인적공제								인적공제추가	삭제	저장																																																																																																																																													
각종 소득공제 항목(국세청자료/그밖의자료)																																																																																																																																																							
학전아동	초중고	대학	장애인 특수교육비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	직불카드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기부금																																																																																																																																														
0	0	4,225,209	0	19,247,100	23,494,794	2,8	기부금 PDF 자료 업로드 결과 반영 →	636,300																																																																																																																																															
0	0	0	0	0	0		기부금명세서 입력분 조회 가능 →	0																																																																																																																																															
0	0	0	0	0	2,079,21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6,824,238	4,451,000	19,640	1,419,800	126,000																																																																																																																																															
0	0	0	0	0	0	0	0	0																																																																																																																																															
0	0	1,400,000	0	9,538,660	12,630,296	8,800	80,000	177,800	801,000																																																																																																																																														
0	0	0	0	0	0	0	0	0																																																																																																																																															
0	247,940	0	0	0	0	0	0	0																																																																																																																																															

**TIP****■ 2017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기부금 입력 방법**

- 기본적으로 모든 기부금(급여 원천징수 기부금 포함)은 기부금명세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 **PDF 자료상의 반영된 기부금** 자료는 PDF 업로드 시, ①기부금명세서와 ②정산공제자료등록(세액공제/명세) 템 화면과 ③인적공제 템 화면 기부금 입력란 윗칸에 자동 업로드 됩니다.
- **PDF 자료상의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기부금(급여 원천 징수 기부금 포함)**은 반드시 ①기부금명세서에 수기등록 하여야 합니다. 반영분은 ②정산공제자료등록(세액공제/명세) 템 화면과 ③인적공제 템 화면 아래 칸에 각각 반영 됩니다.
- 기부금명세서 작성과 기부금이월금 등록이 마무리 되며, 기부금조정명세서 내용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 국세청 오류검증 기준 변경으로 급여 원천징수 기부금도 기부금명세서에 입력하셔야 신고파일 검증시 오류 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 외국납부세액 : 외국납부세액을 입력한다
- 조세조약상 세액감면액 : 원어민교사가 받는 면세혜택은 100% 세액 감면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작성 시 면세되는 금액 입력
- 조세조약상 감면시작일자, 종료일자 :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기간을 입력한다.
- 소득세법감면세액(외국인근로자)
- 조감법감면세액(외국인근로자)
- 조감법감면시작일자, 종료일자 :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기간을 입력한다.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 : 95년~97년에 취득한 주택자금 대상
- 월세액 : 월세 지급액을 입력한다.

반드시 확인!

* **모든 입력 작업 완료후 최종 확인후 저장 꼭 눌러주세요**



Written by Kwon O Young. 권오영

9) 소득공제신고서 탭

소득공제신고서 탭에서는 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다.

2017.12.29. 13:20 (1)

정산공제자료등록

정산년월	2017년	12월	연말정산	<input checked="" type="radio"/> 성명	최7139	<input type="radio"/> 주민번호	714523-2021133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input type="checkbox"/> 표준세액공제																																																																																																																																											
<input type="button" value="기본사항"/> <input type="button" value="근무지실적"/> <input type="button" value="인적공제"/> <input type="button" value="특별공제"/> <input type="button" value="그밖의소득공제"/> <input type="button" value="세액공제/명세"/> <input type="button" value="소득공제신고서"/> <input type="button" value="PDF업로드"/> <input type="button" value="원천징수영수증"/>																																																																																																																																																				
<p>■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1)] <개정 2017.12.20> (제1쪽)</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10">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2017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10">※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td> </tr> <tr> <td>소득자 성명</td> <td colspan="4">최 7 1 3 9</td> <td>주민등록번호</td> <td colspan="4">714523-2021133</td> </tr> <tr> <td>근무처 명칭</td> <td colspan="4">인송광역시교육청</td> <td>사업자등록번호</td> <td colspan="4">314-82-11173</td> </tr> <tr> <td>세대주 여부</td> <td colspan="4">세대주</td> <td>국적</td> <td colspan="4">(국적코드 : KR)</td> </tr> <tr> <td>근무기간</td> <td colspan="4">2017.04.01 ~ 2017.12.31</td> <td>감면기간</td> <td colspan="4">2017.12.01 ~ 2017.12.05</td> </tr> <tr> <td>거주구분</td> <td colspan="4">[O] 거주자 [] 비거주자</td> <td>거주지국</td> <td colspan="4">(거주지국코드 :)</td> </tr> <tr> <td>인적공제 할목 변동여부</td> <td colspan="4">[]전년과 동일 []변동</td> <td>분납신청 여부</td> <td colspan="4">[]신청 []미신청</td> </tr> <tr> <td>원천징수세액 선택</td> <td colspan="4">[]120% []100%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미활용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120,100,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td> <td colspan="5"></td> </tr> <tr> <td colspan="5">인적공제 항목</td> <td colspan="5">각종 소득공제 항목</td> </tr> <tr> <td rowspan="2">근로자 내외국인 인적공제 항목</td> <td>성명</td> <td>기본 증명</td> <td>경로 우대</td> <td>증명 일정</td> <td rowspan="2">자료 구분</td> <td colspan="2">보건료</td> <td rowspan="2">의료비</td> <td colspan="3">신용카드등 사용액공제</td> <td rowspan="2">기부금</td> </tr> <tr> <td>주민등록번호</td> <td>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6세 이하</td> <td>건강 고용 률</td> <td>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td> <td>교육비</td> <td>신용카드등 (전통시장 대형마트 제외)</td> <td>신용카드등 (전통시장 대형마트 제외)</td> <td>신용카드등 (전통시장 대형마트 제외)</td> <td>전통 시장 사용액</td> <td>대중 교통 이용액</td> </tr> <tr> <td>I oi</td> <td>인적공제 항목에</td> <td>1</td> <td>0</td> <td>0</td> <td>국세청</td> <td>4,301,440</td> <td>441,000</td> <td>7,731,174</td> <td>17,034,060</td> <td>410,489,982</td> <td>324,038,682</td> <td>12,142,897</td> <td>28,712,680</td> <td>20,059,671</td> <td>1,004,000</td> </tr> </tbody> </table>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2017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최 7 1 3 9				주민등록번호	714523-2021133				근무처 명칭	인송광역시교육청				사업자등록번호	314-82-11173				세대주 여부	세대주				국적	(국적코드 : KR)				근무기간	2017.04.01 ~ 2017.12.31				감면기간	2017.12.01 ~ 2017.12.05				거주구분	[O]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인적공제 할목 변동여부	[]전년과 동일 []변동				분납신청 여부	[]신청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120% []100%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미활용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120,100,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 항목					근로자 내외국인 인적공제 항목	성명	기본 증명	경로 우대	증명 일정	자료 구분	보건료		의료비	신용카드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6세 이하	건강 고용 률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	교육비	신용카드등 (전통시장 대형마트 제외)	신용카드등 (전통시장 대형마트 제외)	신용카드등 (전통시장 대형마트 제외)	전통 시장 사용액	대중 교통 이용액	I oi	인적공제 항목에	1	0	0	국세청	4,301,440	441,000	7,731,174	17,034,060	410,489,982	324,038,682	12,142,897	28,712,680	20,059,671	1,004,000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2017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최 7 1 3 9				주민등록번호	714523-2021133																																																																																																																																														
근무처 명칭	인송광역시교육청				사업자등록번호	314-82-11173																																																																																																																																														
세대주 여부	세대주				국적	(국적코드 : KR)																																																																																																																																														
근무기간	2017.04.01 ~ 2017.12.31				감면기간	2017.12.01 ~ 2017.12.05																																																																																																																																														
거주구분	[O]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인적공제 할목 변동여부	[]전년과 동일 []변동				분납신청 여부	[]신청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120% []100%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미활용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120,100,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 항목																																																																																																																																															
근로자 내외국인 인적공제 항목	성명	기본 증명	경로 우대	증명 일정	자료 구분	보건료		의료비	신용카드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6세 이하	건강 고용 률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		교육비	신용카드등 (전통시장 대형마트 제외)		신용카드등 (전통시장 대형마트 제외)	신용카드등 (전통시장 대형마트 제외)	전통 시장 사용액		대중 교통 이용액																																																																																																																																							
I oi	인적공제 항목에	1	0	0	국세청	4,301,440	441,000	7,731,174	17,034,060	410,489,982	324,038,682	12,142,897	28,712,680	20,059,671	1,004,000																																																																																																																																					
페이지 1/3 PM 1:21																																																																																																																																																				

10) 원천징수영수증 탭

결과내역은 원천징수영수증 탭에서 확인 가능



3. 의료비지급명세서 등록

기본메뉴
업무메뉴
2017.12.24. 17:28 (1)

매뉴검색

귀속년도
2017년

* 본 자료는 급여담당자가 권한을 부여하여야 등록, 수정, 삭제가 가능하니 권한이 필요하신 분은 급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의료증빙코드	지급건수	지급금액	주민등록번호	본인등 해당여부	납입시술비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100-00-00000	외과*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1	61,000	750101-1234567	O	N
<input type="checkbox"/>	100-							
<input type="checkbox"/>	128-							
<input type="checkbox"/>	206-							
<input type="checkbox"/>	608-							
<input type="checkbox"/>	615-							
<input type="checkbox"/>	615-							

의료비지급내역(등록)

성명 [최7139] 주민등록번호 [700101-1234567]

[인송광역시교육청]	[일반직 / 교육행정 / 7급 / 25호봉 / 0]	[재직]			
공무원구분	행정부지방공무원	최초임용일	1993.10.01	현직급임용일	2004.07.01
기관명	인송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	인송광역시교육청	직위	
보직구분		담당과목		교원구분	
휴직코드	4601010	퇴직일자		해외파견구분	N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상호	국세청제공자료
의료증빙코드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지급건수	0	지급금액	0
본인등 해당여부	본인 장애인 65세이상자	납입시술비 해당여부	N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상호	국세청제공자료
의료증빙코드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지급건수	0	지급금액	0
본인등 해당여부	본인 장애인 65세이상자	납입시술비 해당여부	N

- 1) 메뉴위치 : [나의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 2) 의료비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지출내역을 등록하여 제출한다. 해당 명세서는 의료비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가 제출해야 한다.
 - 3)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내역에 대해서는 인별로 합계 금액을 기재, 의료증빙코드 “1” 포함(사업자등록번호, 건수는 기재하지 아니함)
 - 4)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다.

기본메뉴	업무메뉴	2017.12.24, 17:28 (1)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귀속년도 2017년 조회 출력			
<p>*본 자료는 급여담당자가 권한을 부여하여야 등록,수정,삭제가 가능하니 권한이 필요하신 분은 급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p>[별지 제43호 서식]</p>					
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자(연말정산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최 7139		주민등록번호	714523-2021133	
상호	인 송 팔 역시 교 육 청		사업자등록번호	314-82-11173	
주 소	(생략)				
의료비 지급내역					
의료비충제대상자		지급처	지급내역		
주민등록번호	본인 등 해당여부	사업자등록번호	의료 증빙 코드	건수	금액
750101-1234567	0	100-00-00000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1	61,000
750101-1234567	0	100-01-00003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2	244
750101-1234567	0	128-90-69477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1	15,000
750101-1234567	0	206-27-28258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1	7,520,000
810101-2234567	X	608-90-60351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1	75,100
750101-1234567	0	608-90-60351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1	75,100



4. 기부금명세서 등록

기부금명세서등록

2018.01.08. 09:52 (1)

기부금명세서등록

기부금명세서 등록, 수정, 삭제가 가능하니 기부금이 필요하신 분은 기부금명세서등록을 통해 기부금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명세서 등록

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호	지급구분	지급건수	지급금액	기부자관계	기부자성명	기부자주민등록번호
1	120-01-36788	한국대학교	법정기부금(10)	1	66,000	배우자	홀부인	810101-2234567
2	203-82-00639	대한기부금	법정기부금(10)	1	10,000	본인	김길동	750101-1234567
3	203-82-00639	대한기부금	법정기부금(10)	1	30,000	배우자	홀부인	810101-2234567
4	307-07-07844	기부금단체3	지정기부금(40)	1	105,000	배우자	홀부인	810101-2234567
5	307-07-07844	기부금단체3	종교단체기부금(41)	1	600,000	배우자	홀부인	810101-2234567
6	991-00-00000	기부금단체1	지정기부금(40)	1	362,000	본인	김길동	750101-1234567
7		정치자금	정치자금(20)	2	264,300	본인	김길동	750101-1234567

합계(기부금명세서등록금액) 8 1,437,300

* 정치자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사업연도 합계액을 기입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주민)등록번호는 하이픈(-)없이 숫자만 입력 해셔야합니다.

1) 메뉴위치 : [나의메뉴-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등록-기부금명세서탭]

- 2) 기부금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 지출내역을 등록하여 제출한다. 해당 명세서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신고 시 포함되어 신고된다.
- 3) 해당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지급건수, 지급금액, 기부금구분, 기부자관계, 기부자성명, 기부자주민등록번호를 차례로 입력한 후 저장한다.



* 나이스 원천징수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명세서 작성 여부

-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전자신고파일 신고 시 근로소득신고파일에 기부금 내역이 같이 신고되어 오류검증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이스 원천징수 된 기부금의 경우에도 기부금명세서에 작성을 반드시 해셔야 합니다.

4)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기부금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다.

기부금명세서등록

2017.01.01.~2018.01.01. 09:52 (1)

기부금명세서등록

기부금명세서 등록, 수정, 삭제가 가능하니 기부금이 필요하신 분은 기부금명세서등록을 통해 기부금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소득자(연말정산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최 71 39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략>						
기부금 지급내역							
기부처	지급내역	지급구분	기부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건수	금액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122-31-21111	테스트	1	100,000	법정기부금(10)	본인	최 71 39	714523-20211133

페이지 1/1 PM 3:44



5. 연금저축공제 등록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 우리은행	79D1AB29A65	2,400,000	0
개인연금저축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2A4D3DD2B	600,000	0
연금저축	삼성생명보험 (주)	851FDDE99	1,200,000	0
청약저축	(주) 우리은행	1072201391199	1,200,000	0
장기집합투자증권	(주) 우리은행	0A0125EC4D82A56	2,500,000	0

합계(연금정산동록금액) 7,900,000 0

- 1) 메뉴위치 : [나의메뉴-연말정산-연금저축공제등록]
- 2) 연금저축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 본인의 연금저축 지출내역을 등록하여 제출한다. 해당 명세서는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신고 시 포함되어 신고된다.
- 3) 해당 연금저축의의 구분, 금융회사, 계좌번호(증권번호), 불입금액을 차례로 입력한다.
- 4) **공제금액 자동입력을 눌러 공제금액을 확인하고 저장한다.**
- 5)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연금저축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연금저축지급명세서			
소득자(연말정산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최 71 39	주민등록번호	714523-2021133
상호	인 솔 할역 시 교육청	사업자등록번호	3148300090
주 소	(생략)		
연금저축 지급내역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불입금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새마을금고	12342314231	2,000,000 100,000

※ 작성방법

1. 연금계좌·세액공제·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불입금액과 소득·세액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구분란은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저축구분란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 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1/1 PM 8:40



6. 월세명세서등록

- 1) 메뉴위치 : [나의메뉴-연말정산-월세명세서등록]
- 2)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한다.
- 3)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는 월세액 탭을 클릭하여 내용을 작성한다.

월세명세서등록

2017.12.24. 17:36 (1)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월세액 소득공제					
입력	임대인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택 유형	주택계약 면적(m ²)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여부					임대인 계약기간 시작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임대인	7712081623456	아파트	88	대구시 동구 출하서로3길 2 2017.01.01

나의 메뉴

- 정산공제자료등록
-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 기부금명세서등록
- 연금저축공제등록
- 월세명세서등록
- 원천징수영수증
- 교직원공제회회원업무

나의업무

--초기메뉴--

- 4)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는 경우는 아래 탭에 내용을 작성한다.

월세명세서등록

2017.12.24. 17:36 (1)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금전소비대자 계약내용					
입력	대주	주민등록번호	금전소비대자 계약기간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여부			시작일 종료일	이자율	계 원리금 이자 공제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강0188	791208132456	2017.01.01 2017.12.31	3.2	400,000 300,000 100,000 160,000

합계(공제금액) 160,000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인 성명	주민번호	주택유형	주택면적(m ²)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 전세보증금
최7139	7101011234567	단독주택	80	대구시 동구 신서동 1159	2017.01.01 2017.12.31 50,000,000

합계(전세보증금) 50,000,000

- 5)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인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적지 않는다.
- 6)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는다.
- 7) 공제금액은 월세액 입력 시 자동으로 계산된다.



7. 정산공제자료 등록 최종 확인후 저장

① 메뉴위치 : [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

The screenshot shows the '정산공제자료등록' (Settlement Deduction Data Registration) screen. The interface is in Korean. Key elements include:

- Header:** 2018.01.13. 18:17 (1,02)
- Toolbar:** 기본메뉴, 업무메뉴, 메뉴검색, 승인사항 (with icons for 신청, 미결/협조함, 공람함, 예결함, 기결함, 반려함, 메시지함), 나의 메뉴 (highlighted with red box 1), 연말정산 (highlighted with red box 2), 정산공제자료등록 (highlighted with red box 3).
- Search Bar:** 귀속년도 (2017년), 조회 (Search), 저장 (Save) (highlighted with red box 5).
- Buttons:** 기본사항 (highlighted with red box 6), 근무지실적, 인적공제, 특별공제, 그밖의소득공제, 세액공제/명세, 소득공제신고서, PDF업로드, 원천징수영수증.
- Data Input Fields:**
 - 기본사항: 국적 (대한민국), 세대주 (세대주), 총급여액 (비과세제외) 0, 비과세총액 0.
 - 근무기간: 현 근무 시작일 (2017.01.01), 현 근무 종료일 (2017.12.31), 근무기간변경 (highlighted with red box 10).
 - 기타소득: 소득금액 0, 과세금액 0, 비과세금액 0.
- Buttons:** 저장 (Save) (highlighted with red box 8), 근무기간변경 (highlighted with red box 9).

반드시 확인!

- * 정산공제자료등록 -> 기본사항 -> 국적 옆 저장 -> 근무기간 옆 근무기간변경 클릭
 - 저장을 눌러줘야 적용 분야가 제대로 됨 반드시 잊지 마시구 저장 눌러주세요
 - 모든 입력 작업 완료후 최종 확인후 저장 꼭 눌러주세요

② 소득공제신고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지급명세서,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등
- 출력 → 출력물 및 연말간소화서비스 출력물 각종 제출서류를 함께 행정실로 제출해주세요.

* 이중공제로 연말정산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③ [붙임1] 증빙서류제출 반드시 확인후 서명 제출 해주세요.



[붙임1]

증빙서류제출

제출기한	2018년 1월 24일(수)	
입력기간	2018년 1월 17일(수) ~ 1월 24일(수)	
제출서류	대상 및 증빙	방법
① 소득공제신고서	전교직원 나이스 출력물을 서명 제출	<p>☞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탭->귀속년도(2017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p>
② 의료비공제신고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을 서명제출	<p>☞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귀속년도(2017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p> <p>☞ 증빙서류 첨부 제출</p>
③ 기부금공제신고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을 서명제출	<p>☞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기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17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p> <p>☞ 증빙서류 첨부 제출</p>
④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을 서명제출	<p>☞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연금저축공제등록->귀속년도(2017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p> <p>☞ 증빙서류 첨부 제출</p> <p>☞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월세명세서등록->귀속년도(2017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p> <p>☞ 증빙서류 첨부 제출</p>
⑤ 주민등록등본	기본공제 대상 확인용으로 사용하니 꼭 제출	<p>☞ 민원24 : http://www.minwon.go.kr</p>
⑥ 가족관계증명서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p>☞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efamily.scourt.go.kr</p>
⑦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파일 및 기타 증빙서류	전교직원	<p>☞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 인->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내역조회->귀 속년도(2017년)->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보험료부터 기부 금까지 둘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 [파일명: 2017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p> <p>*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PDF파일도 제출 요함”</p> <p>☞ 기타 증빙서류 제출</p>
⑧ 서약서	전교직원	[붙임 2] 작성후 출력 서명 제출

[붙임2]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본인은 2017년도 연말정산시 부양자 기본공제(소득 유·무), 의료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를 받고자 할 때 약국, 병원, 종교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서류 착오 제출 시 정산 후 세무서장이 기관장에게 통보함)

2018년 1월 일

신청인 : (인)

학교장 귀하